

개정내용

-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 부동산소유자의 범위에
상속인을 포함하고,
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법률 제19232호, 2023.3.14.) 부칙 제11조를
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감면기한을 3년 연장

적용요령

-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(부칙 §1)

2 개정조문

<지방세특례제한법>

개정 전	개정 후
제74조(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) ① · ② (생략)	제74조(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)
③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
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<u>2025년 12월 31일까지</u> 경감한다.	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
④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(이하 이 조에서 “주거환경개선사업”이라	④ -----